



제품안전의 국제표준화



제품안전을 둘러싼 변화는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품안전체계도 급속히 변화되어 왔다. 제품안전 사회인식의 변화, 제품안전기준의 국제표준화, 제품안전정책의 프레임 변화, 제품안전 정보의 공유화, 제품안전 공급망 관리와 이력추적제도의 등장 등 변화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품안전을 둘러싼 글로벌 시장 환경과 사회 인식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제품안전기준의 국제표준화'일 것이다. 제품안전 국제표준화의 대표적 사례 두 가지를 통해 변화의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문 은 숙 박사

ISO 소비자정책위원회
제품안전작업반 공동의장

사례1. 중고제품 안전의 국제표준화

제품안전은 배고픔이 해결되고 생활의 여유가 생겨야만 돌아볼 수 있는 이슈였다. 소비자도 생산자도 제품안전을 필요조건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소비자는 제품의 안전이 생명과 건강에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품을 고르고 사용할 때 안전을 챙기게 되었다. 생산자도 마찬가지이다. 기업에게 제품안전은 어느 정도 이익을 낼 수 있을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서 기업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짧은 기간의 대단한 변화이다. 여전히 생계가 빠듯한 영세기업에게 제품안전은 부담스러운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세계 시장은 이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

여전히 배고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제품안전 문제는 심각하다. 이 지역 소비자들은 경제적으로 열악하다 보니 값싼 중고제품에 의존한다. 구입한 중고제품이 불량

이거나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일이 많아 소비자들의 신체적 경제적 피해는 심각하다. 없는 돈에 어렵게 산 제품이 써보지도 못하고 고장나버리거나 불량이어도 소비자들은 중고제품이라는 이유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중고제품에 대한 피해보상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 지역 소비자들에게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나 보상받을 권리 같은 건 꿈같은 이야기였다.

중고제품이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개도국에서의 중고제품 안전문제는 곧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다. 국제표준화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ISO COPOLCO)는 불량중고품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문제와 피해에 대응할 국제표준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작업에 착수했다. 2014년 드디어 [ISO/TS 20245:2014 중고제품의 교역 (Cross-border trade of second-hand goods)]이 마련되었다.

[ISO 중고제품 교역에 관한 기술규격표준]은 국가 간 거래되거나 판매, 기부, 교환되는 중고제품에 대한 최소한의 심사기준(minimum screening criteria)을 담고 있다. 물론 심사의 목적은 중고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건강, 안전,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불량이나 안전하지 못한 중고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가 마련된 국가들은 많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도 개발도상국에 중고제품을 수출할 때는 자국의 안전법제나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른바 이중기준이다. 자국 내 소비자들은 보호하면서 수입국 소비자들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 ISO 중고제품 국제기술규격표준의 등장으로 전 세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중고제품 가이드라인(universally applicable guidelines for second-hand goods)이 마련된 것이다.

앞으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판매, 기부되는 중고제품은 국제기술규격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중고제품은 품질, 제품정보, 사용조건 등과 마찬가지로 안전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평가를 통해 제품을 A (very good), B (good), C (fair), D (poor)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제기술규격표준이 적용되는 중고제품의 범위에는 자동차, 부품, 의류, 휴대폰, 기계제품, 의료기기 등이 포함된다. 중고제품 국제기술규격표준은 국가 간 중고제품의 수출입, 각 국가의 통관 및 운송 기준 등에 적용되어 소비자 안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중고제품이 가난한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물질 만능의 소비주의, 쓰고 버리는 1회성 소비패턴, 차고 넘치는 생활쓰레기 등에 문제의식을 갖는 개인 또는 집단 소비자들이 착한 소비, 좋은 소비를 위해 중고제품을 선택하고 있다. 하나의 새로운 소비 트랜드이기도 하다. 유럽이나 북미 국가, 일본 등에 가면 중고제품 대형 판매점, 체인 상점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 값싸니까 안전문제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사라졌다. 안전은 제품이 시장에 나와 가격이 매겨지기 이전에 이미 갖추어져야 할 자격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이소가 KC 인증을 받은 제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하듯이 1천원하는 제품도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사례 2. 제품안전 기업 책임의 국제적 표준화

제품안전을 둘러싼 시장 환경과 사회인식의 변화를 국제적 무대에서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사례는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화’이다. 제품안전 문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국지적 사건 이슈에서 국제적 이슈로 등장하게 된 요인이었다. 안전한 제품의 생산은 국경을 넘어 기업 사회적 책임의 주요 내용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제품안전에 대한 법제를 갖추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품안전기본법,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이라는 기본법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제품안전 특별법과 제도를 갖추고 있다. 제품안전관리체

계도 매우 선진적으로 구비되어 있다. 그러나 제품안전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편차는 매우 심하다. 이를 악용해 안전하지 않은 제품이 고의로 또는 걸러지지 않아 제품안전장치가 허술한 나라도 흘러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는 피해 국가였다. 당시 EC(유럽공동체)가 어린이장난감의 중금속 규제를 강화하는 시점에 유럽 지역에서 생산된 장난감들이 우리나라로 대량 수입된 적이 있었다. 새로이 도입될 중금속 규격기준에 미달되는 제품들이 중금속 기준이 상대적으로 허술하고 일부 중금속에 대해서는 기준 조차 없었던 우리나라로 수출되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수입제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경각심과 함께 정부의 제품안전정책에 대한 소비자 단체의 반발을 일으켰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어린이장난감의 안전검사기준을 대폭 강화하였고 제품안전을 중요한 정책의제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은 제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요구를 불러일으키고, 제품안전법제와 정책이 선진국 수준으로 변모토록 하는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h2>유럽장난감 수입 크게 늘어</h2> <h3>EC 중금속 규제 강화되…국내 기준은 허술</h3> <p>내 장난감 안전성 규격기준 허술해 최근 기준이 대폭 강화됨으로 수입될 우려가 있는 비자문체를 연구하는 시민의 회장 조영황(은 데미크·영 등 EC 17개국이 올 1월부터 강도재료의 중금속기준을 강화한 뒤 국내 수입량이</p> <p>예년 같은 기간보다 국가에 따라 최고 1천% 이상이나 급증하고 있고 이 가운데 기준강화 이전에 생산된 규격미달제품이 섞여 있음을 가능성이 높으나 협행법으로는 규제할 방법이 없어 문제라고 밝혔다.</p>	<p>m, 카드뮴 75ppm 대 1백ppm이고 수은·셀레늄에 대해서는 국내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p> <p>지난 3월말 현재 EC로부터의 장난감·인형 수입량은 6만5천달러로 지난 한해동안의 수입총액 58만천달러를 앞지르고 있고, 같은 기간보다는 1천% 이상 높아졌다. 시민의 모임은 공업진흥청 등 관계당국에 어린이 장난감 안</p> <p>전기준을 강화할 것과 유럽의 규격미달제품의 수입규제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p> <p>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부모의 다짐' 10개항 발표</p> <p>교육문제해결에 발벗고 나선 학부모들의 모임인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가 28일 단국대에서 창립대회를 갖는 정식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학부모대표 박희란씨는 '학부모선언'을 통해 "부모들이 나서 학벌위주의 사회</p> <p>으로는 어린이용 장난감에 각 규제하는 등 검사기준을 유럽 사용된 수은이나 셀레늄 등 중금속의 함유량이 일정수준 이하로 규제되는 등 어린이 장난감 검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p> <p>공진청은 이와 함께 검시대상 공업진흥청은 6월 최근 어린이들에게 해로운 장난감이 많이 나온에 따라 수은은 25ppm 세례액 모형기구, 취미용품 등도 5ppm 이하로 사용토록 추구해 어린이들이 사용 가능한 모든 용품에 대해서도 이 검사기준을 적용키로 했다.</p>	<h2>어린이 장난감 검사기준 강화</h2> <h3>공진청, 수은등 함유량 규제키로</h3> <p>앞으로는 어린이용 장난감에 각 규제하는 등 검사기준을 유럽 공통화·한국기준 수준으로 대폭 강화해 오는 8월3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p> <p>공진청은 이와 함께 검시대상 공업진흥청은 6월 최근 어린이들에게 해로운 장난감이 많이 나온에 따라 수은은 25ppm 세례액 모형기구, 취미용품 등도 5ppm 이하로 사용토록 추구해 어린이들이 사용 가능한 모든 용품에 대해서도 이 검사기준을 적용키로 했다.</p>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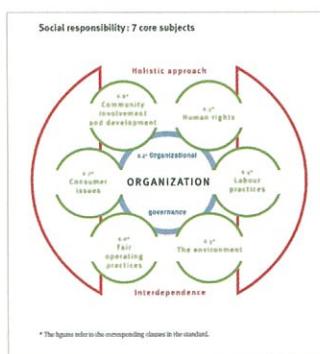
안전하지 않은 제품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어 안전기준이 허술한 국가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강요하는 일은 계속 되었다. 국제소비자기구(Consumers International)를 중심으로 각 국의 많은 소비자단체들은 '안전의 이중기준' 문제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수출 기업, 특히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수입국의 허술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하더라도 수출국의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파는 것은 비도덕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소비자라 해서 더욱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권리는 없다. 반대로 개도국의 소비자들이 선진국 소비자에 비해 덜 안전한 또는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근거도 없다. 안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국제적으로 가장 뜨거운 소비자이슈가 되었다.

- 안전한 제품 및 서비스 제공,
- 적합성 평가, 자발적 리콜
- 제품 디자인부터 위험 최소화
- 소비자능력에 따른 적절한 정보 제공
- 독성물질 등의 사용금지 및 표시의무
- 새로운 물질, 기술, 생산방법 등의 위해성 평가
- 국제적으로 공인된 안전표시 제공
- 적절한 사용방법 제공 및 위험 경고
- 위험상황 예방 및 안전조치

끈질긴 소비자단체들의 요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화 논의로 결실을 맺게 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국제표준화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소비자권익을 위한 표준의제로 채택된 것이다. 많은 국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긴 시간의 거듭된 논쟁을 거쳐 2010년 [ISO 26000 사회적 책임 지침(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이 세상에 나왔다. 본래 취지의 기업 사회적 책임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정부나 노동계 등의 사회적 책임까지 포괄하는 표준지침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ISO 26000이 글로벌 시장에 주는 상징적 의미는 축소되지 않았다.

[ISO 사회적 책임 표준지침]은 사회적 책임의 원칙에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주요하게 다뤄야 하는 소비자 쟁점에는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포함하고 있다. 제품안전을 위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책임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 사회적 책임 표준지침]에 따라 이제 전 세계 기업들은 안전한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을 기본적 책임으로 한다. 이제 예측 가능한 소비자 오용도 기업의 책임 사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기업은 법적 요건과 관련 없이 반드시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잠재적 위험을 예측하여야 하며,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회수할 책임을 갖게 되었다. 중고제품의 국제표준, 제품안전 기업책임의 국제표준 등 제품안전의 국제표준화는 글로벌 시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제품안전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출처 : ISO